



# 민사소송법 기본 & 심화 강의계획표

— 최평오 교수 —

시 간	교 재	비 고
월·화·수·목·금 10:00~14:00	[신민사소송법](이시윤)(제공) + [강한 단권화 민사소송법](최평오)(제공) + 보충 프린트(제공) (현재까지 나온 최신판례와 기타 개정사항 등)	9월 1일 25회 (9/1~)

### ※ 2022년 기본&심화 강의 수강대상

• 올해 1차를 합격하고 민소법을 입문은 하였지만 아직 감을 잡지 못한 수험생으로서 **민소법을 정통적 교과서로 공부하여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2023년 2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투철한 수험생**

### ※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통한 기본&심화 강의의 필요성

• **민사소송법은 반드시 고득점 해야 함**(P/F하에서 특허·상표에 비해서 **점수를 매우 잘 주는 민소법이 합격의 원동력이 됨**). (특히 제57회에서 특허법은 50~59점대가 45명; 상표법은 50~59점대가 37명인 반면에 민소 70~79점대가 44명, 60~69점대가 322명, 60점 이상이 총 366명; 그런데 커트라인은 51.11)

• **제59회처럼 判例사안을 그대로 하여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경우에는 정답을 틀리는 수험생은 별로 없음**(이 경우에는 답안지의 양을 더 정확히 더 많이 적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또한 의의와 조문 등 암기사항을 정통적으로 적는 것이 절대 유리함).

• 위에서 본 것에 비추어 결국 **민사소송법을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답안지 내용을 정확하고 또한 양을 많이 적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정통적인 용어구사가 절대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은 다른 교재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이제는 필수적으로 한번은 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함**(교과서를 보고 공부한 답안지를 채점 교수가 한눈에 알아보는데 이는 고득점으로 연결 됨을 반드시 명심!!) ☞ 교과서를 통한 **INPUT**를 많이 해두어야 **OUTPUT**가 많이 되어 답안지 양을 많이 채울 수가 있음.

### ※ 2022년 기본&심화 강의 특징

• **정통적인 이시윤 교과서 강의를 통하여 정확히 이해를 한 후에 그 자리에서 강한 단권화 민사소송법으로 스스로 정리가 바로 가능한 획기적인 강의!!** (☞ 최평오교수는 지속적으로 이시윤교과서에 관여하고 있으므로(아래 참조) 이시윤교과서에 가장 정통하고 있고 **제15판 이후 추가된 판례나 개정법 내용 등은 보충프린트를 통하여 보완함!!**

- ▶ **이시윤 제15판 머리말** 중에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만한 원고를 정비함에 있어서 **최평오 교수**의 공을 잊을 수 없다. 고마움을 표시하며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 ▶ **이시윤 제14판 머리말 ~ (생략) ~ 이시윤 제4판 머리말** 중에서(학설을 정리하여 가면서 이론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작업과정에서 많은 분의 협조를 받았다. **최평오 교수**가 성의껏 도움을 주었다.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회 차 이시윤저 기준	일 정 <b>강의 중요 내용(일정에 따라서 진도는 가변적 임!!)</b>
<p>■ 1회 ■ ~신의칙(36)</p>	<p>*민사소송절차(선순위성 등) 간단하게 개관 *비송사건(특히 과거양육비청구가 소송인지 아니면 비송인지 여부)--<b>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b>--공유물분할청구의 소, 토지경계확정청구 *신의칙(A)-- 소송상대의 부당형성(중인의 부당작출)(<b>최근판례유의</b>), 소송상의 금반언(특히 부채소특약에 반하는 소제기), 소권의 실효(및 항소권의 실효가부), 소권의 남용 *신의칙 위반의 효과</p>
<p>■ 2회 ■ ~제척기피 (92)</p>	<p>*강행규정위반 간과의 효력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A)--외국국가도 우리의 민사재판권에 복종하는지 여부(<b>절대적면제주의 판례결론 주의, 최근판례유의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잇달린 판례 유의</b>) *<b>국제재판관할권 (전면 개정 국제사법 속지)(A)-(판례 완벽 습득)</b> *재판권흠의 효과(A) *제척과 관련하여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의미 및 진심관여의 의미(<b>판례를 많이 알아둘 것</b>) *기피사유(<b>최근판례유의</b>)와 기피신청의 효과</p>
<p>■ 3회 ■ ~이송(131)</p>	<p>*토지관할: <b>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주의</b>, 관련재판적--<b>관련재판적의 남용-최근판례유의(A)</b> 및 관련재판적의 효과 *전속관할(A)(심급관할) *사물관할(소가)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범위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문제점(개정법 속지)(A) *합의관할--전속적합의와 부가적합의의 구별기준 및 구별실익, <b>관련재판적과 전속적 합의관할의 충돌(A)</b> *국제적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요건(<b>판례 완벽 습지</b>) *합의관할의 효력 범위 *변론관할(사례의 한 논점으로)(AA) *심급관할위반의 제소(<b>판례유의</b>) *관할위반의 상소의 의미(<b>판례유의</b>) *소송의 이송--<b>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유무</b>, 전속관할에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관할위반시 이송신청권 유무, 전속적 합의관할의 재량이송가부; 심급관할위반의 이송결정의 적법여부 및 다투는 방법, 이송전의 행위가 이송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AA)</p>
<p>■ 4회 ■ ~당사자 적격(163)</p>	<p>* 성명모용소송-- (특히 피고측 송달모용 및 <b>송달과정에서 피고측 모용 주의(항소실 판례)</b>(AA)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AA)(제소전사망;--특히 정정 이나 경정이나-- (<b>제소후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망과 관련한 최근판례는 완벽히 습지</b>) *당사자정정 및 당사자변경 *당사자능력(특히 <b>학교와 같이 당사자무능력자 출결시 조치 및 보정방법</b>(특히 정정 이나 경정이나) *조합의 소송상지위--조합의 당사자능력--특히 <b>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할 때의 논점(AA)</b> *당사자적격; <b>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A)</b> *단체내부분쟁에서 피고적격 *제3자의소송담당; 특히 대위소송(A)(<b>대위소송의 법적성질</b> 및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범원의 조치, <b>채무자의 권리불행사와 관련한 판례 완벽 습지</b>)과 임의적소송담당(<b>최근판례 습지</b>)(AA)</p>
<p>■ 5회 ■ ~대리(200)</p>	<p>*미성년자의 소송법상의 지위(소송능력)(A)--특히 소송무능력자이지만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선별적인 일부추인가부 * 소각하판결이 나온 경우에 미성년자 스스로 항소가부(<b>다투는 한도내에서 소송능력 인정됨을 주의</b>) *<b>간과하여 본안판결이 나온 경우에 구제방법</b> *심급대리원칙(AA) *<b>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A)</b> *과기환송시 소송대리권부활여부(A) *무권대리(쌍방대리금지위반의 효과, 소송행위와 표현대리)(AA)</p>
<p>■ 6회 ■ ~장래이행의 소(234)</p>	<p>*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4가지 완벽습지) * 형성판결에도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 *소송요건의 조사와 소송판결(A)--<b>대위소송에서 요건심리선순위성의 문제(A)</b> *승소확정판결 후 시효중단만을 위한 위한 확인 청구 허용(<b>최근 전합판례를 포함하여 관련 판례 완벽 습지!!</b>) *장래이행의 소(<b>미리 청구할 필요와 관련하여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선이행청구와 관련하여 판례 완벽 습지</b>)</p>
<p>■ 7회 ■ ~재판장의 소장심사前(272)</p>	<p>*확인의 이익(AA)--(<b>시효중단만을 위한 확인의 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주의!!</b>)--특히 확인의 소의 보충성--국가상대소유권확인청구--대상적격(과거의 권리관계이지만 대상적격이 있는 경우--대위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단체내부분쟁에서 확인의소의 피고적격자 *증서진부확인소의(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및 <b>특히 유효적절한 수단 일 것 판례 주의(A)</b> *소의 이익(특히 권리보호자격) <b>소송물이론</b>(중요사례의 선결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A))--<b>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판례 완벽 습지</b> -- <b>확인소송의 소송물</b> -- 일부청구의 소송물 -- 진이청구와 말소청구소송물 -- 이전등기청구소송물 -- 건물철거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 <b>어음채권청구와 원인채권청구</b></p>
<p>■ 8회 ■ ~ 시효중단(306)</p>	<p>*재판장의 소장심사(A)--<b>소장보정시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소장보정명령불응시 소장각하명령가능시기(A)</b> *<b>소장의 적법여부 판단기준시기</b> *중복소송금지(AA) ㉠대위소송중 대위의제소, ㉡대위소송중 채무자의제소, ㉢채무자의 소송중 대위소송 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b>전합판례주의</b>), ㉣상계항변(AA) ㉤심판형식의차이--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일부청구와 전부청구 ㉦소유권확인소의 계속중에 상대방의 소유권확인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A) *국제적 중복소송</p>
<p>■ 9회 ■ ~적시제출주의 前(350)</p>	<p>*<b>처분권주의(A)</b> -- <b>완벽습지</b> *형식적 형성소송(공유물분할청구) *토지경계확정청구의 법적성질(A)(A)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채무일부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인용판결의 가부 *철거청구속에 명도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A) *선이행청구와 장래이행판결</p>

회 차	일 정	강의 중요 내용
<p>이시윤저 기준</p> <p>■ 9회 ■ ~적시제출주의 前(350)</p>		<p>*변론주의의 내용과 그 보완책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 및 실의 <b>*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A)--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가정하변 판례 주의)</b> *소멸시효 및 취도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A) <b>*유권대리주장속에 표현대리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A)</b> *피고가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경우--대위소송과 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 에 대한 자백(직권조사사항의 조사방식))(A) <b>*지적 의무(A)(판례 많이 알아두어야)</b> *석명권--<b>적극적 석명거부(A)</b></p>
<p>■ 10회 ■ ~소송상 형성권 행사(393)</p>		<p>*적시제출주의(<b>실효성 확보방안</b>) *이의권 포기과 상실(A) *준비서면(특히 준비서면부제출의 효과(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에서 사실에 증견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A) *(간접)부인과 항변의 구별(A) *소송상 형성권(특히 상계권)의 행사(A) *상계항변의 판단순서</p>
<p>■ 11회 ■ ~송달(445)</p>		<p>*소송상 합의(AA)--소취하계약, 부제소특약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AA)-소송행위에 실제법상하자가 있을 때 민법유추여부(<b>판례 완벽 숙지</b>) *기일의 해태(쌍방불출석 및 일방불출석(자백간주; 진술간주 - 진술간주의 효과 및 한계)(A) *기간의 부준수(A)(소송행위의 추후보완)(<b>판례 많이 숙지해두어야</b>) *공시송달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및 공시송달의 불가능 또는 배제(<b>공시송달 및 송달에 관한 판례는 최근 판례를 포함하여 완벽 숙지</b>)</p>
<p>■ 12회 ■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前(477)</p>		<p>*소송절차의 중단(AA)--중단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 *당연승계이론의 인정여부,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의 문제점(<b>다른 취지의 최근판례와 판례의미를 완벽히 숙지</b>)(AA)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경험법칙위반과 상고(A) *불요증사실 *재판상자백(A)(요건 4가지 완벽 숙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날인의 진정의 자백)--선결적 법률관계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의 인정여부(A) <b>*재판상자백의 철회요건(반진실과 착오에 관한 판례 완벽 숙지)</b> *권리자백(자백의 요건)(A) *자백간주(A)</p>
<p>■ 13회 ■ ~증거보전(530)</p>		<p>*유일한증거(<b>반증포함여부</b>) *사본의 증거신청의 문제점 *증거조사의 필요성과 대상 *증인신문(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금지 됨을 주의) *문서의 종류와 증거력 - -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누어 형식적 증거력, 보고문서와 처분문서로 나누어 실질적 증거력 판단 - <b>특히 사문서에 관한 제358조와 관련하여 2단의 추정</b>의 의미(AA)--1단의 추정(날인의 진정 추정)의 복멸(간접반증대상) *<b>백지보충문서(판례완벽 숙지!)</b> *처분문서(형식적 증거력이 있으면 실질적 증거력 추정됨) *문서제출명령(A)--특히 자기사용문서(<b>최근판례 내용 완벽숙지</b>)--대출품의서 (A) *<b>진로기록부</b>(344조 1항 3호의 문서인지 아니면 제 344조 2항의 문서인지 여부) *문서제출거부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제344조 1항 3호의 문서와 제344조 2항의 문서로 나누어 검토) *당사자본인신문(<b>보충성 폐지 주의!! 다만 필수적 선서의무 부과</b>) *증거보전--소명정도의 학설(증거개시기능 인정여부 관련)</p>
<p>■ 14회 ■ ~증명책임(559)</p>		<p>*자유심증주의(증거공통의 원칙(A)) *변론전체의 취지(A)--독립적 증거원인인지 여부 <b>*증명방해(명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례암기)</b>(A) *증명책임의 분배 *현대형소송에서 증거 구조 편재를 극복 방안(간접반증 등)(A) -- 특히 현행법해석을 통한 증거판제 극복방안(A) <b>*법률상 추정(동시사망의 추정 판례 유의)</b>--<b>등기추정력이 법률상 추정인지 여부(판례완벽숙지)</b></p>
<p>■ 15회 ■ ~화해(605)</p>		<p>*소송종료선언(<b>사례의 한 논점-최근판례유의</b>) *소의취하의 효과(특히, <b>재소금지(AA)</b>)--대위소송과 재소금지--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일 경우--<b>권리보호이의이 새로 생긴 예를 많이 알아 들 것</b> (A)--교환적변경과 재소금지(A) *청구의 포기.인낙(특히 소송요건흡결시 청구인낙의 가부) *재판상화해(법적성결과 관련한 다투는 방법)(AA)</p>
<p>■ 16회 ■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649)</p>		<p>*<b>일부판결(변론의 분리)(허용·불허용 나누어 공부)</b> *판결의 확정시기(A) *판결의 경정(A)--특히 결정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상소추후보완 가부 *기판력 있는 재판(외국재판의 승인요건 중 <b>최근 전합판례 주의</b>) *기판력 작용--<b>항변의 경우에도 작용함을 주의(판례 숙지)</b>(A)--특히 <b>모순관계와 선결관계(A)</b> *기판력의 표준시(A) *변론종결후의 형성권(특히 상계권, 건대청)의 행사(A)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A)--정기금판결후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변경의 소가 가능한지 여부</p>
<p>■ 17회 ■ ~판결의 편취(680)</p>		<p>*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특히 말소기각확정후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b>판결이유판단의 구속력 - 본안판단시에 문제 된다</b>)(AA)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경우에도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A)--말소등기청구 소송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특히 <b>변론종결후의 승계인,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연계시키는 판례 및 최근 판례 주의!!</b>)--(A)--<b>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b> *판결의 편취(특히 허위주소에 의한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의 편취(항소설 판례)(A)</p>
<p>■ 18회 ■ ~청구변경(720)</p>		<p>*객관적 병합(<b>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하여야 하는데 예비적·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b>) 특히 예비적 병합(AA)--<b>예비적병합의 요건으로서의 양립불가능성 구비요부(A)</b> <b>최근 판례 완벽하게 숙지</b>; 이와 관련 판례의 부진정 예비적병합과 학설의 부진정 예비적병합을 완벽 숙지 *물건인도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A) <b>*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을 배</b></p>

회 차	일 정	강의 중요 내용
<p>이시윤저 기준</p> <p>■ 18회 ■ ~청구변경(720)</p>		<p><b>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 누락시킨 청구부분이 재판의 누락인가 아니면 판단누락인지 여부</b> 및 이러한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고 <b>누락된 청구부분을 별소로 제기한다면 이 별소는 적법한지 여부</b> 판단(판단누락설에 의할 때 <b>상급심법원의 조치(취소사판설)</b>(A) *예비적 병합에서 주청구기간, 예청구인용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주청구도 심판대상인지 여부 *<b>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먼저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주문표시 방법</b>(A) *청구의 변경(AA)(특히 <b>교환적 변경의 법적성질 및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변경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b>(A)--재소금지) *청구의 확장과 감축이 청구변경인지 여부(A)</p>
<p>■ 19회 ■ ~예비적 공동소송前(752)</p>		<p>*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 선결성과 계쟁성으로 확인이의 판단(A) *반소의 쟁점(<b>부존재확인</b>의 본소와 이행청구의 반소; <b>반소권연성요건, 예비적 반소,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소유권에 기한 반소, 제3자 반소가부</b>)(A) *기각을 구한 경우의 소송법상의 제 문제점(A) *<b>통공과 필공의 구별기준 및 판단방법</b>(A) *공동소송의 형태(경계확정소의 소송형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A)--특히 수정논의(주장공통원칙) *<b>고필공에서 누락된 자의 보정방법</b>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A) *<b>공유관계소송의 소송형태</b>(판례가 공유소송중에서 필공으로 본 예에는 무엇이 있는가—공유물분할청구 소송형태)(A) *<b>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협의없이 독점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최근 판례 유의!!</b>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청구의 소송형태(최근 전합 판례유의)(A)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대위소송의 형태(AA)</p>
<p>■ 20회 ■ ~ 선정당사자(783)</p>		<p>*<b>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b>---모든 내용 완벽하게 속지(AA)(1인의 자백 효력 및 예비적 피고의 인낙가부—<b>법률상 양립불가능 의미(판례를 완벽하게 암기해두어야 함)</b>(A)--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또는 화해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분리확정되는지 여부(<b>최근판례 완벽하게 속지</b>)(A) *추가적 공동소송의 가부 *선정당사자(AA)--급급 제한부선정의 가부 및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및 <b>공동이해관계가 소멸되어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상실한 경우에 관한 판례의 의미 완벽 이해</b>(AA)--<b>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선정당사자가 인낙한 경우의 효력(판례유의)</b>--선정자의 지위관련(적격유지설 및 적격상실설).</p>
<p>■ 21회 ■ ~소송고지(803)</p>		<p>*보조참가요건(특히 <b>보조참가의 이익(제한설vs확대설)</b>)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A)(<b>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b>)--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보조참가와와의 차이점 3가지)--대위소송중 채무자 참가 *<b>소송고지</b>--특히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측에 보조참가한 경우에 고지자가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AA), 및 <b>소송고지에 관한 실체법상 효과로서 시효중단에 관한 최근 판례 완벽 속지!!</b></p>
<p>■ 22회 ■ ~공동소송참가(822)</p>		<p>*독립당사자 참가(<b>권리주장참가에서 양립불가능성의 의미</b>--특히 부동산이중매매에서 권리주장참가의 가부, 사해방지참가에서 권리침해의 의미)(AA)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피고가 인낙을 하지 못하는 이유(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b>판례완벽 속지</b>)(A) *소송탈퇴(A)--성질논의 및 사해방지참가에서 탈퇴가부, 상대방·참가인 승낙요부 등 - (<b>소송탈퇴에 관한 최근판례유의</b>) *공동소송참가 - 주주의 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것이 공동소송참가인지 여부 및 <b>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최근 판례 속지</b>(A)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가부- <b>피고의 경정 및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b> - - <b>주문 내용 비교하여 완벽하게 속지</b>(A)</p>
<p>■ 23회 ■ ~상소의 이익(853)</p>		<p>*당연승계 *참가승계(<b>최근 전원합의제 판결 주의!!</b>)(A)와 인수승계 - <b>계쟁물의 양수의 경우 및 추가적 인수 가부(관련판례 정확히 이해)</b>(AA)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상소기간의 준수여부(동일청사판례 주의)(A) *상소이익(A)--<b>전부 승소하였음에도 상소이익이 있는 경우</b>---묵시적 일부청구, 상계항변, 청구이익의 소 3가지를 완벽하게 이해</p>
<p>■ 24회 ■ ~ 상고 前(888)</p>		<p>*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예외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부대항소(A)--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변경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항소취하(A)--파기환송후에 항소취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A)--판례의 문제점 *<b>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b>(AA)(부대항소와 불변금--<b>특히 예외</b>--소각하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소송요건은 갖추었지만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청구기간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b>불변금과 상계항변의 경우</b>))</p>
<p>■ 25회 ■ 상고 ~ 끝</p>		<p>*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파기재판의 방법 *재심의 대상적격(특히 파기환송판결) *<b>재심관할법원과 이송</b> *<b>재심의 적법요건</b>(①대상적격, ②당사자적격, ③재심이익, ④재심사유의 주장, ⑤재심기간준수, ⑥재심의 보충성을 갖출 것) *재심사유는 특히 3호, 5호, 9호, 10호, 11호를 완벽하게 속지) *<b>가법적행위와 유죄확정과의 관계(합체설과 적법요건설)</b></p>